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1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원텍글로벌비스(이상훈), ②㈜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02-422-7767, ②043-230-78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6호

3. 명칭 :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착 여과시스템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증기보일러에서 발생된 100℃이상의 스팀(Steam)을 히터에 의해서 400~600℃의 과열수증기(Superheated steam)로 변환시켜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하면, 과열수증기로 인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과정에 의해서 제거함으로써 활성탄 재생이 완료된다. 흡착성능이 저하된 활성탄의 신탄으로 교체 또는 대형 재생시설로 운반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공정에 적용되고, 오염물질 흡착으로 활성탄 흡착성능 저하시 과열수증기에 의한 재생공정에 의해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을 회복시킴으로써, 흡착, 역세, 재생공정이 모두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5. 보호기간 : 2017.08.25. ~ 2025.08.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